의 안 번 호

1688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0. 11. 6.(금)

나. 제 출 자 :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0. 11. 13.(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0. 12. 4.(금)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2021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나. 주요내용

- O 단계별 집행계획
 - 1)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19건(도로 17, 주차장 1, 체육시설 1)
 - 2) 단계별 집행계획
 - · 1단계(3년 이내 시행): 4건(도로 3, 체육시설 1)
 - · 2단계(3년 이후 시행): 15건(도로 14, 주차장 1)

다.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경희)

O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

32 (제231회-본회의제2차부록)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집행계획은 3년 이내 시행을 1단계, 3년 후에 시행하는 시설을 2 단계로 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 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함.

- 주요 내용으로는
 - 1)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19건(도로 17, 주차장 1, 체육시설 1)
 - 2) 단계별 집행계획
 - · 1단계(3년 이내 시행): 4건(도로 3, 체육시설 1)
 - · 2단계(3년 이후 시행): 15건(도로 14, 주차장 1)
 - O 이상과 같이, 본 의견청취 건은 관련법령에 따라 도로, 주차장, 체육시설에 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 건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 거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 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 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 정 2011.4.14.. 2013.3.23.>
 -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 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 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 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 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2.7.1.] 제85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 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7.9.19.〉
 -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 시 ·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 · 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

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4.10.〉

③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1.7.1.〉

④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 제58조(권한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25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같은 별표 제 10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무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1· 5, 2014·6·30, 2020. 10. 29.〉
-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9>
- ③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09·11· 5, 2014·6·30, 2020, 10, 29.>

권 한 위 임 사 무(제58조관련)

[별표 25] <개정 2020. 10. 29.>

권한위임 사무(제58조 관련)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 2.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중 「국토의 계획 및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중 다	
2.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중 「국토의 계획 및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중 다	
음의 사무(단, 위임된 사무 중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입안할 수 있으	
며, 입안한 내용이 둘 이상의 구·군에 걸치	
는 경우에는 공동 입안하거나 협의하여 입안	
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	
이 직접 입안하거나 입안자를 지정할 수 있음)	
가. 교통시설	
1)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에 한정함)	
2) 주차장	
3) 자동차정류장(시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	
동차터미널 제외)	
4)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나. 공간시설	
1) 광장(폭 20m 미만인 도로에만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에 한함)	
3) 공공공지	
다. 유통・공급시설	
1) 수도(송・배수시설에 한함)	
2) 전기공급설비	

위임사무명	근거 법규	비고
3) 가스공급설비		
4) 방송·통신시설		
5) 공동구(시·종점이 해당 구·군에 한함)		
6) 시장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에 한함)		
2) 체육시설(골프장 제외)		
3) 공공청사(구・군 또는 지역 단위 청사에 한함,		
광역시 전체를 관할하는 시설은 제외)		
4) 문화시설		
5) 연구시설		
6) 사회복지시설		
7) 공공직업훈련시설		
8) 청소년수련시설		
마. 방재시설		
1) 하천(소하천에 한함)		
2) 유수지		
3) 방화설비		
4) 저수지(농업용수에 한함)		
5) 방풍설비		
6) 방수설비		
7) 사방설비		
8) 방조설비		
바. 보건위생시설		
1) 도축장		
2) 종합의료시설		
3) 장사시설		
사.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3) 폐차장		
4)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3.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 및 처리결과 통보	법 제26조 및 영 제20조	
(입안권이 위임된 사무에 한함)		

위임사무명	근거 법규	비고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초조사(입안권이 위	법 제27조	
임된 사무에 한함)		
5. 주민 등의 의견청취(입안권이 위임된 사무에	법 제28조	
한함)		
6.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법 제30조 및 영 제25조	
법 제2조제4호다목 중 다음의 사무(법 제88조제		
6항의 실시계획에 반영된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다. 다만, 별표 25 제2호의 단		
서에 따라 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는 제		
외)		
가. 교통시설		
1)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에 한하며 시장이		
직접 입안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주차장		
3)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나. 공간시설		
1) 광장(소로 이하에만 접한 교통광장)		
2) 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에 한함)		
3) 공공공지		
다. 유통·공급시설		
1) 수도(송·배수시설에 한함)		
2) 시장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에 한함)		
2) 체육시설(골프장, 운동장 제외)		
3) 공공청사(구·군 또는 지역 단위 청사에 한함,		
광역시 전체를 관할하는 시설은 제외)		
4) 문화시설(구·군 또는 지역 단위 시설에 한함,		
광역시 단위 시설은 제외)		
5) 사회복지시설		
6) 공공직업훈련시설		
7) 청소년수련시설		
마. 방재시설		
1) 하천(소하천에 한함)		

위임사무명	근거 법규	비고
2) 유수지		
3) 방화설비		
4) 저수지(농업용수에 한함)		
5) 방풍설비		
6) 방수설비		
7) 사방설비		
8) 방조설비		
바. 보건위생시설		
1) 도축장		
2) 장사시설		
사.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		
2) 폐차장		
3)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공	법 제32조	
람(결정권이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8.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법 제33조	
실효 등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결정권이	법 제48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		
효 고시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현황과 단		
계별 집행계획의 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	법 제47조	
에 대한 조치		
9. 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		
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입안 및 결정·변경결정하는 경우에		
는 제외)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에		
관한 입안·결정·변경결정		
나.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결정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관한 입안·결정·변		
경결정		

위임사무명	근거 법규	비고
가. 시행자 지정		
나. 실시계획의 작성·변경·폐지의 인가와	법 제98조 및 제99조	
이에 관한 공고, 공람, 고시, 협의 등		
다. 준공검사 및 후속조치		
17. 기초조사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조사·측	법 제130조	
량 등에 따른 타인의 토지출입허가에 관한		
사항 (위임된 사무에 한함)	W 1400-	
18.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위임된	법 제133조	
사무에 한함) 19. 영 제93조제4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특례		
적용에 관한 사무(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무 포함)		
20.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무(단,		
위임된 사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는 제외하며, 구역지정, 설치계획수		
립,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시와 미리 협의하		
여야 함)		
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나.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다.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징수		
마. 기반시설설치비용 관리 · 사용을 위한 특별		
회계 설치・운용		
바.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계획 등에 관한 공고,		
열람, 고시, 협의 등		
사.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교통		
건설국란 제6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 안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다.		
아.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의 도시계획시설 사		
업추진(별표 25 제16호)		
H T 전(결료 40 세10오)		

(제231회-본회의제2차부록) 41

위임사무명	근거 법규	비고
21.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에 관		
한 사무. 다만, 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성장관		
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22. 법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		
지적성평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		
23. 법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해		
취약성분석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		